

< 일 러 두 기 >

- 법령명 : 식품원료 Glycine tomentella 뿌리의 사용제한
- 제정일 : 2024년 7월 11일
- 최종개정일 : -
- 출처 : 대만 식품약품관리서 (방문일 : 2024년 9월 20일)

# 식품원료 Glycine tomentella 뿌리의 사용제한

1.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의1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.
2. Glycine tomentella 뿌리 원료는 건조 후 티백 형태로 물에 우려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며, 일일 섭취제한량은 9g이다.